

() 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
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(단순경비율사업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기타소득자용)

관리번호 -

거주구분 거주자1 / 비거주자2
내·외국인 내국인1 / 외국인9
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④ 전자우편주소	
⑤ 납세지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 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		
⑥ 주소지 전화번호	⑦ 주사업장 전화번호		⑧ 휴대전화번호	
⑨ 신고유형	32추계-단순율 40비사업자	⑩ 기장의 무	2간편장부대상자 3비사업자	11 신고구분 10 정기신고, 20 수정신고, 40기한후신고
② 환급금 계좌신고	12 금융기관명	13 계좌번호		

③ 지방소득세액의 계산

구분

금액

⑭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③ 과세표준란의 금액

⑮ 세율: 「지방세법」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참고하여 적습니다.
※ 세율표 (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)

과세표준	2017년 귀속년도		과세표준	2018년~2020년		과세표준	2021년부터	
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		세율	누진공제액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
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
5억원 초과	4.0%	2,9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
			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.2%	3,540천원
						10억원 초과	4.5%	6,540천원

⑯ 산출세액: [과세표준(⑭)×세율(⑮)－누진공제액(⑮하단 세율표 참고)]

⑰ 세액감면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③3 및 ③4 합계액×10%

⑱ 세액공제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③5 ×10%

⑲ 결정세액: ⑯－(⑰+⑱)

⑳ 가산세액:
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
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기타란에는
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

무(과소)신고
납부지연
기타
합계

㉑ 총 결정세액: ⑲+㉒(합계란 금액)

㉒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4)의 ⑤6(중간에납세액을 제외한 금액)×10%

㉓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: ㉑－㉒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장애인증명서(해당자로 한정하며,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 2. 기부금명세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서식) 및 기부금납입영수증(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각 1부 3. 가족관계등록부(주민등록표등본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,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1부
------	---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